

불임 1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9일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제조·지식서비스 융합 분야의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경영·기술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 보육 및 지원

□ 모집대상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및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입주일 기준)

[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 규모 확대의 이유로 현재 1인 창조기업이 아니어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업종 확인(자가진단)

(참고자료.2 확인 또는 K-스타트업>시설·공간·보육>OneClick>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모집규모 : 7개 내외 기업(예정)

- 선정평가를 통해 입주 가능한 1인 창조기업 7개사 내외 선정
 - 지원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제재 중인 자, 휴업 중인 자,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등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5년 6월 1일~26년 5월 31일)

* 기간 만료 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가능(최대 2년)

* 계약 위반사항 발생시 강제 퇴거될수 있음

2

입주조건 및 지원내용

□ 입주조건

- (예비창업자) 입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 (창업기업)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장 주소지를 센터 입주 사무실*로 변경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4층)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지원내용

- 1인실 및 2~5인실(5m²/인당)의 독립 및 공동사무실
- 월 임차료(보증금 포함) : 무료(단, 관리비 일부 징수가능)
- 제공서비스 : 공용 복합기 및 팩스, 유무선 인터넷, 공용PC, 인실 별 책상·의자, 회의실, 3D프린팅 랩실
- 전문가자문(멘토링), 투자유치IR, 분야별 경영 교육, 선택형사업, 창업자 네트워킹, 3D프린팅 기술교육 등

3

신청방법 및 입주기업 선발

□ 신청방법

- (접수방법) 입주신청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접수](mailto:hyo596@gsmiba.kr)(hyo596@gsmiba.kr)
- (신청기간) **'25. 5. 9.(금) ~ '25. 5. 21.(수), 14:00까지(시간엄수)**
- (제출서류)

제출 서류	필수	① 입주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1부 ②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사진필수) 1부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④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부 ⑤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 (K-Startup) ⑥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명부
	해당	⑦ 가정 증빙서류(미제출시 미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업 선발

○ (선발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발(1.5배수 이내)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기술 우수성(30점), 시장성(40점)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실시(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창업자 역량(20점),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20점), 기술 우수성(20점), 수출잠재력(15점), 시장성(15점), 정부지원 필요성 등(10점)

- (가점) 공고일 기준 수원시 소재의 1인 (예비)창조기업, 특허권(등록) 보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최대 3점 부여

- (최종선정) 대면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입주포기 기업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3개팀 후보과리(발표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

- (결과통보) 협력기관((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문 및 개별(문자) 통보

○ (입주계약)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단, 입주일 및 사무실 규모(1~5인실)가 희망 조건과 맞지 않은 경우
이즈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수의 기여에 인증기회 부여

* 입주보류 기업의 우선순위는 변동없이 유지됨

□ 뮤의(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031-204-1070 / hyo596@gsmiba.kr

[참고자료 1]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심사표

기 업 명		대표자명	
심사위원명	(서명)	평 가 일	20 . . .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1인 창조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 창업기업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창업자 역량 (30)	1-1.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20	16	12	8	4	
		1-2.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8	6	4	2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2-1.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을 구체성	10	8	6	4	2	
		2-2. 기술(제품)의 차별성	10	8	6	4	2	
3	기술성 (20)	3-1.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	8	6	4	2	
		3-2.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8	6	4	2	
4	시장성 (20)	4-1.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	8	6	4	2	
		4-2.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0	8	6	4	2	
5	기타 (10)	5-1.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	4	3	2	1	
		5-2.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소 계(A)		
가점사항		해당여부
각 1점	① 수원시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수원시인 경우) (1점)	
	②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시행대회 포함) (1점)	
	③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 실용신안권 등 (1점)	
	④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소 계(B) Tip :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3점 까지 부여가능
합계(A+B)

평가의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	--

[참고자료 2]

1인 창조기업 인정 범위

1인 창조기업 정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 규모 확대의 이유로 현재 1인 창조기업이 아니어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증명 확인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pre> graph TD A[업종 확인] --> B[업종이 해당 되지 않음] B --> C[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C --> D[업종해당] D --> E[건강보험자격증명 확인] E --> F[4대 보험가입자명부] F --> G[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G --> H[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 1개월 이후 여부] H --> I[4대 보험가입자명부] I --> J[1개월 초과] J --> K[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K --> L[4대 보험가입자명부] L --> M[상시근로자 있음] M --> N[유예기간 여부] N --> O[4대 보험가입자명부] O --> P[유예기간 아님] </pre> <p>※ 유예기간 판단 참고</p> <p>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임</p> <p>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8.3.1~'18.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8.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8.4.1~'21.12.31까지임</p>	
<p>지원대상</p>	
<p>지원대상 아님</p>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41
도매 및 소매업	전문직별 공사업	4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육상운송 및 퍼시프라인 운송업	49
운수업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업	64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